

계룡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공설납골당(이하 “납골당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그 운영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사용권”이라 함은 납골당 사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별표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 사용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.
2. “사용자”라 함은 납골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자를 말한다.
3. “상속자”라 함은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를 말하며, 그 상속의 우선순위 또한 연고자순을 말한다.

제3조 (명칭 및 위치) 납골당의 명칭은 정명각이라 하고, 그 위치는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140-1번지에 둔다

제4조 (시설의 사용) ①납골당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시민에 한하여 당해 시설의 수급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.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굴된 무연고 유골을 우선으로 안장할 수 있다.

제5조 (시설 사용신청) ①납골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시설의 위탁운영자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납골당의 사용권은 법 제2조제9호의 연고자순에 따른다.

제6조 (사용료 등) ①납골당의 사용신청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(이하 “사용료 등”이라 한다)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주민등록상의 시민이 아닌 관외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제7조 (사용료등의 감면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골당의 사용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
2.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
3. 독립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
4. 기타 천재·지변의 사유에 의하거나,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
제8조 (사용기간) ①납골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.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15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일전부터 3월 이내에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.

제9조 (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)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사용신고 및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납골당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이 소멸된다.

②납골당의 사용권은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자에게 주어지며, 매매·양도·임대 등을 할 수 없다.

제10조 (사용허가의 취소 등) ①시장은 사용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연장신청 및 계약갱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골당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②사용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제2항의 기간내에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제11조 (위탁관리운영 등)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납골당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·관리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에 의거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계룡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하는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④위탁기간 등은 별도의 위·수탁 협약서에서 정하고 기간 만료시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수탁자는 위탁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납골당의 관리·운영에 사용하던 묘적부 등 모든 장부·서류와 장비·비품 및 부대시설 등을 시에 무상귀속시켜야 한다.

제12조 (수탁자의 의무) ①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

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수탁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예산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·운영외에 사용할 수 없다.

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3조 (위탁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
2. 수탁자가 관리·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4조 (지도·감독)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·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,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위탁업무의 이행여부를 지도·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5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된 장사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[별표1]

납골당사용료금(유연고)

기준	사용료금			비고
	계	사용료	관리수수료	
1구당	118,000원	88,000원	30,000원	